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6.1.26(화) 10:00

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5일

3. 제안 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: 2,000백만원

○ 출자 목적

-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('15. 2. 4.)과 함께 충청북도-**-성장***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펀드 출자
-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위함

○ 출자 근거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5항 제1호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 제1항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 제11호

○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"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" 출자

○ 기대 효과

- 지역전략산업 등 중소.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사업화 촉진
- 성장 가능성 있는 기술혁신 보유 중소.벤처기업 지원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5. 검토의견

- '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'은 201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- 다만, 동 계획안에 따라 충청북도와 기업 등이 향후 출자약정 총액이 310억 원으로 이에 따른 재원마련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